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
	배포일시	2021. 5. 12.(수) /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 물류산업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진철, 팀장 조태영, 사무관 이양구, 주무관 한승한, 최용민 • ☎ (044) 201-4027, 4018, 4020, 4019	
보 도 일 시	2021년 5월 13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12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안전운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

- 부산지역 운수업체 대상 정부 합동점검… 제도·문화 확산에 주력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직무대행 윤성원)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현장 준수 상황을 확인하고 시장 내 제도 정착을 확립하기 위해 5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정부·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-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·과속·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,
 - 도입 당시 시장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·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('20~'22년)로 시행하고 있다.
 - 지난 '19년 12월, 「'20년 적용 안전운임」을 최초로 고시한 이후로, 유가변동을 반영한 '20년 안전운임 변경고시('20.7), '21년 적용 안전운임 고시('21.3)를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.
- 국토교통부는 시행 2년차를 맞은 안전운임제의 안착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, 화주와 화물운송업체로 하여금 자발적인 안전운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하였다.
 - 특히, 이번 합동점검에는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화물운송업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*도 참여하였다.

* 한국통합물류협회,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,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, 화물연대 4개 단체 참여

□ 점검반은 5월 6일과 7일 이틀간 주요 물류 거점 중 한 곳인 부산항 인근 소재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**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, 편법적인 수수료 수취** 등을 비롯하여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상의 **운수사업자 준수사항**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하였으며,

○ 안전운임 미만 운임 지급 156건, 안전운임 이상으로 운임 지급 후 별도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수취한 사례 256건, 리베이트 27건 등 **안전운임 위반 정황 439건**을 적발하였다.

○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향후 2주간의 소명 절차를 거쳐 확정된 내용에 따라 **시정조치 요구, 과태료 부과**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이진철 과장은 “이번 정부 합동점검을 계기로 안전운임제가 **화물운송시장에 더욱 안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**”면서,

○ “앞으로도 화주·운수사업자·화물차주 등 다양한 주체의 이해관계 속에서 **균형감 있는 제도 운영**으로 물류 산업이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**국내 주요 물류 거점**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이양구 사무관, 한승한 주무관, 최용민 주무관(☎ 044-201-4018, 4020, 401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